3.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2월 28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시민행복교육국장)

○ 회부일자 : 2019년 3월 4일

○ 상정일자 :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년 3월 19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청년의 순조로운 사회진입과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위탁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 청년들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생애이행과정을 고려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청년층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한「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명기하여 활동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청년정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 기능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자함.

○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사회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 밖에도 일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곽영구)

○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위탁 근거와 생애과정별 사회진입 촉진 및 생활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개정의 배경은

► 청년수당 정책은 2016년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에게 상품권을 주는 이른바 “청년배당”의 형태로 시행한 후, 서울(청년수당), 부산(청년구직활동비)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기 시작했음.

► 대구시에서는 2015년 12월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수당 정책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당시 제도의 실효성과 예산 부족,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음.

2017년 10월에도 대구시는 청년희망 공감토크에서 “청년수당”을 주제로 청년과 관계전문가들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정책의 정확한 개념을 짚어보고 다양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차별화된 대구형 청년수당 정책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왔음.

► 그 후, 새로이 출범한 민선7기 대구시 공약으로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새로이 선보였으며, 7월 17일 공약사항에 대한 소통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세대공감 원탁회의’에서 세대별 공약중 하나로 “대구형 청년보장제”가 논의되었으며,

2018년 9월 11일 ‘청년공감 청년원탁회의’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구형 청년보장제” 50개 사업을 발표하였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와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 정의하거나 정비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추가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명시적 역할을 강화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향후 다양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설치하려는 청년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음.

► **안 제12조에서는** 현재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청년센터에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가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관련 사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 **안 제15조에서는**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핵심사업인 "대구형 청년수당" 지급을 위하여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을 위한 사회진입 촉진 대책과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의 생활안정 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의 시행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로 명시하였음.

► **이번 개정안 제출은**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주요 핵심사업인 “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 편성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심사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로 의결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전에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청년수당 정책의 도입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취업대책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역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구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늦게 시작하는 만큼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대구형 청년보장제”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고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안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청년 관련 사업을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규정한 이유는?	○ 기존의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고 대구시 청년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비 사업 등 별도의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청년센터가 맡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구체화 시켰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